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보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정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중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기술사법 제3조의 기술사 직무에 해당하는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기관, 건설사, 민원인 등의 요청이 있을시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용역)과 VE사업을 의미한다.

제3조[포상 및 징계]

정관 제11조 회원의 포상대상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제한하며 포상방법은 당협회의 상패 및 표창장을 수여함과 건설기술인의 날에 포상대상자로 추천한다. 징계는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하며 제명 경우에는 복권할 수 없다.

제4조[임원선출]

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정관 제18조 임원의 피선거권에서 회원 가입년수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5조[대의원의 선출]

정관 제21조의 선출직 대의원은 대의원 명수(100명)가 미달일 경우 정관 제22조의 피선거권에 위배 되더라도 회장에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규정]

정관 제38조에 위원회 업무를 중심으로 집행하되 위원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별도의 규정은 위원장이 발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할수 있다.

제7조[지회의 설치운영]

지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발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분장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

- ① 당협회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세무상 수익사업은 별도의 법인 또는 독립채산체로 운영한다.
- ② 재정부족으로 협회운영이 어려울시는 회장 또는 이사회 또는 관련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대출을 통해 차입토록 하며 차입금에 대한 법정이자(년4%)를 지급한다.

제10조[회비세칙]

- ① 평생회비는 50만원(입회비포함)으로 분납 할 수 있으며 년회원은 입회비 5만원과 매년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회원, 명예회원도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정관 제6조4항1호의 권리는 특별회원사가 회비를 특별회원사 소속 건축시공기술사의 재직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찬조하였을시 적용한다.
 - 1. 0~1인 이하: 50만원
 - 2. 2~5인 이하: 200만원
 - 3. 6~10인 이하: 400만원
 - 4. 10~30인 이하: 1,000만원
 - 5. 31인 이상: 2,000만원

제1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정기총회(2022년03월19일)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